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11850 취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영농조합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3,757,100원, 지방교육세 10,361,310원, 농어촌특별세 5,180,650원[1]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취득세 121,058,880원, 지방교육세 10,089,480원, 농어촌특별세 5,044,73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위 각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5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30.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8. 13.부터 2014. 9. 1.까지 B, C으로부터 다음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현물출자를 받아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대상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경료일	취득원인	취득가액(원)	원소유자
[redacted]군 D 대 444㎡	2014. 9. 1.	2014. 8. 1.자 현물출자	210,000,000	B
D 지상 2층 단독주택(1층 54.53㎡, 2층 47.78㎡)				
E 임야 171㎡				
F 대 300㎡			170,000,000	C
F 지상 2층 단독주택(1층 28.94㎡, 2층 26.19㎡)				
G 대 320㎡			170,000,000	
G 지상 2층 단독주택(1층 28.94㎡, 2층 26.19㎡)				
H 대 291㎡	2014. 8. 12.	2014. 7. 19.자 매매	150,000,000	
H 지상 2층 단독주택(1층 28.14㎡, 2층 24.56㎡)				
I 임야 16,495㎡	2014. 8. 13.[2]	2014. 8. 12.자 현물출자	1,817,980,000	
J 임야 70,941㎡				
합계			2,517,980,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5

다. 원고는 2014. 8. 13.경 및 2014. 9. 1.경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위 표 기재 금액과 같이 기재하여 취득세신고 및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100,719,200원, 지방교육세 10,071,920원, 농어촌특별세 5,035,960원을 면제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12. 16.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당초 신고가액(취득가액) 2,517,9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23,757,1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0,361,3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180,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20. 3. 4. 피고에게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금액에 관하여 과세표준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9.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2) 이후 2014. 8. 12.자 현물출자가 2015. 4. 5. 합의해제되고, 2015. 4. 14. 이에 기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가 면제되었다가 이후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추징 대상이 된 후 별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취득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추징 대상이 된 후 별도로 취득세 신고를 한 바 없고, 원고의 법인장부가 존재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당초 원고의 지방세면제신청시 함께 행해진 취득세신고서상의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을 추징대상이 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위법사유가 중대,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추징 대상 취득세 과세표준

1)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데 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 같은 법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정하는바, 이는 취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해당 과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5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하는 때에 그 지방세액이 확정된다고 정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구 지방세법의 합목적적 해석상 원고가 취득세 면제신청 과정에서 신고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의 '해당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에 성립하므로, 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 사건과 같은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 추징의 경우에는 추징요건 완성 당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조세채무의 확정에 있어서는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나, 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이 부과처분하는 때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취득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었다가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도 그 추징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43407 판결), 그러한 추징 대상 취득세 역시 위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추징 대상 조세채무의 확정에서 조세채무자의 신고 등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내리는 부과처분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새로운 부과처분의 형태로 추징하는 처분이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5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의 추징 대상 조세채무는 피고가 결정하기 전에 이미 추징요건이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후 원고의 추징 대상 과세표준 신고가 없어 피고가 추징 대상 조세채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에서 드는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할 때, 과세관청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추징의 과세표준을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물론,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문단의 '구 지방세법'은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이 문단에 한정하여 이 법을 의미한다)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취득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정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아래의 구 지방세법 제10조) 등의 해석상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아래의 구 지방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5

법 제10조 제5항)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감면취득세의 추징에 있어서는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10조의 과세표준 규정 이외에 별도로 제20조 제3항에서 위와 같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 '해당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해당 과세표준'의 의미에 대하여 당초 취득세 신고납부 시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추징 대상 과세표준 등인지 여부가 일견 명확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별도로 규정을 둔 점 등에 비추어 당초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추징 대상 과세표준은 개념상 구분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추징은 기존 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된 이후에 해당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후에 드러나는 등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리는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당초 신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현물출자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일치하고, 그 매매 및 현물출자의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과세 대상물건을 취득하는데 든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고, 취득자의 신고가 전혀 없었다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어서 예외적으로 반드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이 추징 대상 취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서 당초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5

다) 원고는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을 근거로 추징 사유가 발생하기 전 취득세 면제신청 과정에서 행해진 취득세 신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추징 대상 취득세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의 해석상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이지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이어서, 유상취득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존재하고 원고의 당초 취득세신고가 있었던 이 사건과는 그 적용측면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라)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의 내용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 대상이 된 이후 별도의 취득세 신고가 없는 경우 그 과세표준을 당초 취득세 신고납부의 과세표준과 반드시 다르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으며, 취득자의 당초 취득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경우도 아니라면 추징 대상 취득세 산정에서 당초 취득세 신고 당시의 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마) 나아가 취득세 추징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추징 대상이 된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바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추징 세액을 산정한다면, 대부분 시가표준액이 신고가액보다 낮은 상황에서 성실하게 추징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납세자에 비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가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될 수 있어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당초에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향후 면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5

된 취득세를 추징할 때 당초 면제받은 세액 상당을 추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하자가 중대, 명백한지 여부(가정적 판단)

1) 설혹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이유 없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733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5

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현물출자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객관적인 처분문서를 구비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와 같은 신고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추징 대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신고가액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 법적 판단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5

별지

관계 법령

■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5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5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농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끝.